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A Study on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유 수 현(Su-Hyeon Yoo)*
한 상 완(Sang-Wan Han)**

목 차

- | | |
|--|-------------------------------|
| 1. 서 론 | 4. 1 저작권법 조문 해석에 관한 논의 |
| 2. 도서관과 저작권 | 4. 2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논의 |
| 2. 1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 4.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논의 |
| 2. 2 저작권 수용 정책의 필요성 | 4. 4 비도서자료에 관한 논의 |
| 3. 저작권 권리관계의 처리(Copyright Clearance) 및 문제점 | 5.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제시 |
| 3. 1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처리 | 5. 1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의 기본원칙 및 구성 |
| 3. 2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 5. 2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 |
| 4. 대학도서관과 저작권에 관련된 쟁점 분석 | 6. 요약 및 제언 |

초 록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대량적 집합소이자 이용처이기 때문인데,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법률을 준수하면서 적정한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료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개시, 링크, 비도서 자료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및 이용자들의 행동지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se days the number of copyright issues concerning libraries is increasing. The reason is a library is the place that collects and uses copyrighted materials. The copyright issues that libraries face will be more radical, because of the growing number of digital media especially appearance of a digital library. To make the current situation better,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of copyright compliance policy for university libraries in order to serve within the range of copyright law. Copyright compliance policy is a reasonable guideline meeting user's intellectual needs and protecting a copyright holder's right.

키워드: 대학도서관, 저작권 수용 정책, 저작권 지침,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 도서관에서의 복제
University Library, Copyright Compliance Policy, Copyright Guideline, Reproduction in Libraries

* 국회도서관 연속간행물과(yoosu@yonsei.ac.kr)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whan@yonsei.ac.kr)

논문접수일자 2004년 2월 19일

제재확정일자 2004년 3월 15일

1. 서 론

도서관은 저작권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기관이다. 도서관은 과거에 도서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로서, 오늘날에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는 정보중심(information center)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인류의 지적·문화적·교육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바, 이러한 도서와 정보는 모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정상조 1996, 10). 또한 저작권은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자료에 적용되고 새로이 창조되는 자료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도서관 일상 업무의 전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Crews 2000, 6).

Hoffmann은 사서가 저작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사서는 그 서비스 대상인 이용자의 역할모델이기 때문이며, 둘째 사서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할 뿐 더러 사서 자신과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저작권 제도는 법이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넷째 사서나 그 기관은 저작권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도서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이유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확립하고 유지하도록 돋는 것이 사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의 양이 폭증하고,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정보전달 및 기록매체가 매우 다양해지게 되었다. 도서

관에서도 소장자료를 보관·이용시키기 위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기관 혹은 개인에게 전송하기도 한다. 특히 디지털도서관의 출현으로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는 전통적인 인쇄물 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전자화된 디지털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의 복제 및 전송이 더욱 간편해지고, 자료의 전문(全文) 제공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나,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도서관은 도서관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저작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해서 이용자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도 지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경계선이 필요하며, 이는 미국·영국 등 저작권 제도가 발달한 선진국에서 저작권 수용 정책(Copyright Compliance Policy)이라는 이름으로 각 도서관에서 제정·준수되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대학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다루었다. 첫째,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처리 방법을 파악하고, 둘째 대학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여, 셋째 적법하면서도 국내의 대학도서관 실정에 맞는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국내 대학도서관의 정보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도서관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도서관과 저작권

2. 1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실제로 도서관에 관한 저작권 분쟁은 국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Williams & Wilkins社는 자사에서 출판한 학술지를 미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과 미국립건강도서관(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Library)이 상호대차를 통해 불법복제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Williams & Wilkins Co. v. United States, 420 U.S. 376 (1975)).

또한 Hotaling은 말일성도(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의 도서관이 마이크로 피시 자료를 복제하여 장서에 추가하고 목록이나 색인시스템에 이용하며 일반인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Hotaling v. Church of Jesus of Latter-Day Saints 1997).

프랑스에서는 문인협회와 출판노조가 공공 도서관에서 대출되는 책에 저작권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공공도서관의 유료 대출론이 대두되었고(조선일보 2000, 4월 12일), 미국에서는 대형 출판사가 도서관에 전자도서를 제공하는 전자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독점출판권을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한겨레 신문 2002, 6월 18일).

그밖에도 최근 OCLC가 뉴욕에 있는 한 호텔을 대상으로 뉴이집진법의 무단 사용에 대

해 소송을 걸기도 하였다(OCLC News & Event 2003).

2. 2 저작권 수용 정책의 필요성

Goodyear(2001)가 ‘최근 역사에서 저작권 만큼 도서관 정책을 쉽게 뒤바꿀 가능성이 있는 이슈는 없다’고 말했듯이 앞으로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저작권 문제는 더욱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 도서관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보호 사이의 합리적인 선인 저작권 수용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은 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용자를 포함한 직원 및 경영진 모두에게 저작권법 준수에 관한 행동의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저작권 수용 정책은 이용자에게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표준이 되며, 직원 및 이용자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정책의 지속적인 관리는 정보기술의 변화와 저작권법의 개정시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Bruwelheide(1989, 129)는 도서관에서 저작권 수용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첫째 저작권 수용 정책은 교직원 및 경영진과 기관을 보호하고, 둘째 법을 이행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저작권법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들을 막고, 넷째 무엇보다도 법적 문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은 저작권 수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대학도서관은 각국 도서관계의 지침에 따라 저작권 수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저작권 수용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자, 이용자, 사서 및 대학 구내 복사점 등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국내의 경우 정책 수립의 지침이나 저작권 관계 지침의 부족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정책을 수립·준수하고 있는 도서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작권 수용 정책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도서관의 입장에서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을 제안하는 바, 이에 대해 추후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저작권 권리관계의 처리(Copyright Clearance) 및 문제점

3. 1 현행 저작권법에 의한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처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복제·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직접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아서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또한 전국 곳곳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도처에서 소량으로 일어나는 복제를 일일이 적발하여 권리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또 저작자란 그러한 일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다(이상정 2000, 23). 따라서 권리자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도 손쉬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채

택·운영되고 있다.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특정한 기관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도서관 등의 저작물 이용자가 당해 기관의 허락을 얻고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저작권자 개인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의하여 저작권자는 허락의 대가로써 일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물 이용자는 적법하고도 간편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호홍 1999, 10).

한편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은 도서관간 열람 목적의 전송 및 디지털 도서 등의 출력에 대해 법정허락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간 도서 등을 전송하는 경우,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이 보상금을 손쉽게 지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자로 구성된 단체에 이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단체로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지정되었다(2003. 10. 15).

이호홍(2003, 55)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도서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저작권자로부터 복사·전송권을 수탁받아 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저작권자의 입장에 있게 된다. 이에 대하여 도서관은 저작물의 이용자 입장에 선다. 도서관에서 주로 이용되는 형태인 복사·전송에 대해 도서관이 센터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이를 양자는 다음과 같은 상호 이점을 얻는다. 도서관으로서는 수

많은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그 허락을 얻는 번거로움이 이 센터로 말미암아 한꺼번에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에 대해 센터는 저작물의 대량적 이용처인 도서관의 이용허락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아 저작권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자가 창작에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이점을 얻는다는 것이다.

법정허락제도의 도입으로 수반되는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정 이용행위에 대하여 사전적인 이용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료,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저작권법에 의한 도서관의 이용행위별 법적 규율은 <표 1>과 같다. 이용허락의 대상은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용행위로써,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후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보상금의 대상은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용행위를 말한다. 무상이용의 대상은 이용허락은 물론, 보상금 지급 의무도 없는 이용행위이다.

특히 도서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로는 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디지털 자료의 출력과 동법 제28호제3항에 의한 다른 도서관으로의 자료 전송 행위이다. 디지털 자료의 출력의 경우에는 출력이 이루

어진 도서관이, 전송의 경우에는 전송을 행한 도서관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도서관 보상금제도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로 지정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3. 2 도서관 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도서관에서의 법정허락제도는 저작권자와 이용자간에 이루어지는 시장 교섭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권세기 2002, 7), 저작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상금만 지급하면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저작권자의 반감을 살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

또한 현재 도서관에는 개정 저작권법에 의해 보상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는 도서관이 빠른 시일 내로 보상금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가 도출될 수 있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정비하고, 이용자 과금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자체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의 보상금 확보 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자체 과금시스템을 현재 개발하여, 2004년 1월 경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배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각 도서관에서는 국회도서관이나 법원도서관 등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또 다른 과금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표 1〉 도서관의 이용행위별 법적 규율 내용*

구 분	이용행위	형태	법적 규율	비 고
복 제	조사연구 목적(이용자의 요청)	디지털	이용허락 대상	
		아날로그	저작권 제한(무상)	1인 1부, 일부
	자체보존	디지털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이를 이용
		아날로그	저작권 제한(무상)	
	다른 도서관 요청(절판등 사유)	디지털	이용허락 대상	
		아날로그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 자료의 출력 (프린트 아웃)	열람목적 관내 전송용	디지털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이를 이용
	열람목적 관간 전송용	디지털	저작권 제한(무상)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이를 이용
	- 자체 데이터베이스 - 전송받은 자료 (단 자료중 일부분에 한해 출력 이 가능함)		저작권 제한 (도서관 보상금 지급)	문화관광부 고시 지급 기준 적용
	- 외부 구입 자료		- 구입 또는 라이선스 조건에 의함	- 계약에 따름. 다만, 일반적으로 구입자료의 경우, 출력에 대한 목시적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전 송	관내 전송	동시열람자수 제한 범위 내	저작권 제한(무상)	
		동시열람자수 제한범위 외	이용허락의 대상	
	다른 도서관 등으로의 전송	판매용 발행 후 5년 미경과	이용허락의 대상	
		판매용 발행 후 5년 경과	도서관 보상금 지급	
		비판매용 (발행 후 5년 경과와 무관)	법정보상금제도의 대상	문화관광부 고시 지급 기준 적용
	도서관 등이 아닌 외부로의 전송		이용허락의 대상	

* 출처: 이영아. 2003.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2003년 12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을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혹은 저작권자를 대표하여 저작권 이용료를 징수하는 한국복사전송권센터에서 통일된 과금시스

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각 도서관은 물론, 개인에게도 무상으로 배포한다면, 센터에서는 보다 수월하게 보상금을 징수할 수 있고 보상금

제도의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을뿐 더러, 도서관에서는 별도의 추가 예산 없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대학도서관과 저작권에 관련된 쟁점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여러 관종의 도서관 중에서 특히 대학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도서관협회(1996, 77)의 정의에 의한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즉, 대학도서관은 원활한 자료의 유통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학술활동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학술연구와 교육목적 달성을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하는 도서관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은 이용 주체가 교수와 학생이며, 이용 객체는 다른 관종의 도서관과는 달리 대부분이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학술정보 및 전자정보의 이용이 많고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료의 구입 경로가 까다롭고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서관 간 상호대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의 복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대학도서관 이용상의 특징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보다 저작권과의 마찰을 빚을 소지가 더욱 크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학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들을 파악하기 위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상담요청을 한 질의들과 도서관메일링리스트의 저작권 관련 질의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저작권법 조문 해석, 디지털 복제 및 전송, 디지털도서관 운영 및 비도서자료에 관한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4. 1 저작권법 조문 해석에 관한 논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와 도서관메일링리스트의 질의들을 분석한 결과 저작권의 보호기간과 저작물의 복제 범위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있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7절(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규정되어 있는 바, 논란의 여지는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이에 대해 많은 사서들의 질의가 있었던 까닭은 도서관 내 저작권 담당 부서 및 담당 사서의 부재로 관련 지식이 부족한 탓이라 하겠다.

저작물의 복제 범위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JRRC(Japan Repro-graphic Rights Center)의 경우 복사허용범위를 출판물 전체의 30% 이내 혹은 총 복사량 60페이지 중 적은 페이지로 20부까지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日本複寫權センター 1999). 영국의 CLA(Copyright Licensing Agency)는 단행본의 경우에는 총분량의 5% 이내나 하나의 장,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기사 전체를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발췌로부터 30부까지 복사 또는 한 학급의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분량만큼 복사가 가능하다고 사용허락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제1항 제1호에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라고 하여 구체적인 적용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틀리고, 도서관마다 다른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허희성(2001, 308)은 도서의 50% 이내,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2, 17)은 5-10%로 권고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내규에 저작물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목적을 위한 교수의 강의용 복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저작권법에는 대학에서 교수가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즉, 교수의 강의용 복제는 위에서 언급한 ‘1인 1부에 한한 일부분의 복제’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반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방송 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제23조)이 존재한다. 이는 교육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등급에 따라 불평등을 초래하는 형평성의 문제 가 발생하는 셈이다.

4. 2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논의

대학도서관은 그 특성상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열람서비스, 지정도서제도, 원문제공 서비스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전송과 관련된 것으로 저작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의 단계별로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학위논문 서비스를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그 졸업생들로부터 이용 동의서를 받고 그 학위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원문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도서관계에는 이러한 이용 동의서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바, 각 대학도서관마다 개별적인 이용 동의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도서관별로 구체적인 동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제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 예로 A대학에서는 B대학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이용할 수 있으나, B대학에서는 A대학 졸업생의 논문을 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기졸업자의 경우 일일이 연락을 하여 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기졸업자의 논문을 원문으로 구축하지 않는다면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더러 저작권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기졸업자의 논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이용시키기 위해 저작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지정도서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해진다. 특히 강의별 혹은 강사별로 강의에 필요한 학술지의 기사나 논문의 원본을 디지털화하여 시스템에 게시, 서비스하는 온라인 지정자료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 강의를 듣지 않는 이용자가 지정자료시스템에 접근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무단 이용 및 컴퓨터 등의 정보저장장치에 다운로드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저작권으

로 보호되는 자료를 저작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내의 오프라인 지정도서제도는 주로 도서관의 한 부분에 지정도서용 서가를 마련하여 소장자료의 복본들을 단기간 대출 및 열람시키는 정도이지만, 도서관 소장자료가 아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 지정도서가 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 처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원문제공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복제·전송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다. 원문제공 서비스를 위해서는 첫째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도서이어야 하며, 둘째 이러한 복제·전송 행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셋째 이러한 행위를 하는 도서관은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는 5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에 있어서 5년이 지난 도서는 그 '통상적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에서는 이를 5년으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은 다소 인위적인 기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신의 문헌 열람이 시급한 과학기술분야, 특히 의학 및 공학 분야에 있어서 5년이라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도서관을 멀리하는 요인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과금시스템의 구축 및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장치 구비 등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시행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4. 3 디지털도서관 운영에 관한 논의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추천도서 서비스, e-Book 및 e-Journal 서비스 등을 시행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는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및 링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먼저 도서의 표제면을 디지털 복제하여 웹상에 게시하는 추천도서 서비스는 현재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표제면의 미술과 사진 등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복제권 및 전송권이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표지 디자인을 전문업체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표제면의 디지털 복제를 통한 웹 게시가 저작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관행상 둑인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 향후 표제면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있을 수 있음을 도서관에서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신문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기사는 엄연히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대학도서관에서 무단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이영아(2003)는 출처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서지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분류기호, 저자기호 등과 같

은 편집정보와 저자명, 서명, 발행처명 등의 서지정보는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이종문 2003, 21-22). 또한 목차나 색인 서지도 그 자체만으로는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록, 서평 등 저작물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라면 이는 저작물의 일부로 간주되고, 저작권으로 보호받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링크는 웹사이트들을 연결해 주는 고리로써 한번의 클릭만으로 공간이동을 하게 하는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이다(黃鍾熏 2002, 307). 링크는 그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top-page link)와 직접링크(sub-page link), 프레임링크(framing) 기법을 이용한 링크 등으로 구분되는데 단순링크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대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참고정보원은 주로 링크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원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 웹사이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4 비도서자료에 관한 논의

저작권법 제28조는 저작재산권 제한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쇄자료 이외의 영화 및 다큐멘터리 비디오, 교육용 혹은 오락용 CD-ROM, VCD, 지도 등의 비도서자료는 저작권법 제28조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한 예로 이용자의 요구

에 의해 1인 1부 일부분을 복제해 준다면, 영화 또는 음악 테이프의 어느 부분까지를 일부분이라 할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현재 대학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는 부스 등을 설치하여 CD-ROM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을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도서 자료의 관외 대출이나 복제 허용 여부, 또한 이를 이용한 공연 및 방송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비도서자료의 저작권 처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우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저작권자와의 직접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5.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제시

5. 1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의 기본원칙 및 구성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용자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저작자의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 수용 정책의 기본 취지는 정보의 공유와 보호 사이의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Bruwelheide(1989, 129)는 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모기관이 저작권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리

고, 모든 직원 및 학생들도 법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개괄 부분, 둘째 공정사용의 의미와 요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복제 및 이용에 대한 지침 부분, 셋째 저작권 처리의 책임과 관리를 맡는 기관 안내 및 행정절차를 서술하는 부분, 넷째 경고문의 표시에 관한 부분이다. 이 외에도 여러 매체에 대한 공정사용의 지침 예, 이용허락을 받는 절차, 관련된 법 조항, 경고문, 명확하게 진술된 do and don't를 포함하는 정책 매뉴얼이 부가적으로 첨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Hoffmann(2003, 15)은 저작권 수용 정책에는 최소한 다음의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저작권법에 대한 개괄
- 공정사용의 요건에 대한 설명
-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지침
- 저작물의 이용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지침
-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관의 정책
- DMCA나 TEACH Act에서 제안 또는 요구하는 정보
- 저작권 경고문의 양식

이를 종합해 보건대, 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은 첫째 정책 및 저작권법의 개요 부분, 둘째 자료의 저작권 확인 및 처리 부분, 셋째 복제·전송에 관한 지침 부분, 넷째 저작권 처리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마지막으로 관련 양식 및 문구 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정책의 각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 및 저작권법의 개요 부분은 저작권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하여금 정책의 필요성과 준수의 의무를 알리고, 국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을 소개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자료의 저작권 확인 부분은 대상 저작물을 구별하는 것으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보호된다면 저작권 처리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해 구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디지털도서관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복제권이나 전송권 처리가 대량적으로 필요하게 될 것인 바, 이러한 경우 저작권 처리가 필요 없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비용절감이나 사무처리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이호홍 2003, 53). 한편 저작권의 처리 부분은 도서관에서의 면책 규정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처리 방법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저작권 처리 방법을 다루고, 특히 개정 저작권법에서 도입된 도서관 보상금 제도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네 번째 부분인 저작권 처리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서는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위해 저작권 등록 방법 및 발생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저작권자의 대항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도서관의 대응책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양식 및 문구 부분은 저작권 경고문, 오남용 판단기준, 저작물 이용허락 요청서,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등에 포함되어

야 할 사항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책의 표준안을 모두 제시하기 보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하는 논쟁들에 대한 해결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 2 저작권 수용 정책의 표준안

정책의 표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그림 1>의 순서와 같이 저작물 이용의 단계를 따라야 힘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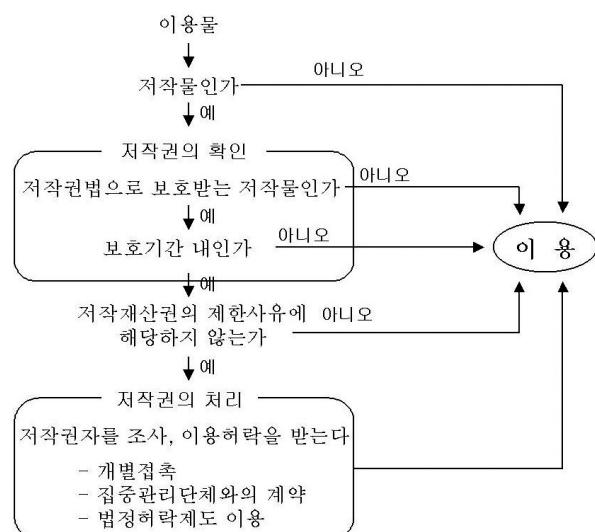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 대상인 자료가 저작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법 제2조제1호에 그 예시가 규정되어 있다. 단순한 사실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물이 아니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용 대상인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파악해야 한다. 동법 제7조에 의해 다음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위에서 제시한 저작물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이 외의 저작물은 모두 저작권법에 의하여



<그림 1> 저작물 이용의 단계

보호를 받되, 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는 공유(public domain)에 속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독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 및 사후 70년인 반면, 우리나라와 영국은 저작자 생존 중 그리고 사후 50년이 경과하면 저작권이 소멸된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며(저작권법 제36조제2항),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과 단체명의 저작물은 저작물이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저작권이 존속되는 공표시 기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37조 및 제38조). 연속간행물의 경우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되,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39조제1항).

대학도서관에서는 외국에서 출판된 학술지 및 단행본이 많이 이용되는데, 이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국내에서 이용하는 경우, 당해 나라의 저작권법이 아닌 국내 저작권법을 따른다. 따라서 저작물을 국내에서 이용하는 한, 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신경 쓸 필요 없이 국내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해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 즉, 도서관에서의 복제 규정(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

저작권의 처리는 저작권자를 조사, 이용허

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저작권자와의 개별접촉,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 법정허락제도의 이용 등 세 가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개별접촉은 이용하려는 저작권자를 직접 찾아내어 허락을 받는 것으로,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 출판사 또는 저작자가 권리의 위탁한 집중관리단체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저작자가 그 권리를 위탁한 집중관리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집중관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관련 서류와 일정의 수수료를 낸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1) 저작물의 복제 범위

먼저 저작물의 복제의 범위에 대해서 국내 학자 및 단체의 견해를 종합하면 단행본의 경우 도서의 5-50%로 범위의 폭이 크나, 저작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5%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5%는 최소한의 규정이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시하는 1/3선까지 복사하는 것도 무리는 없으리라 본다. 학위논문의 복제에 대해서 학위논문을 단행본으로 취급하여 일부분만 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복제는 주로 학술·연구 목적에 해당하므로 저작물 전체의 복사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연속간행물의 경우 미국이나 영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사 전체를 복사하는 것이 허용되며 온라인 전송의 경우에도 인

〈표 2〉 저작권 처리별 이용행위

저작권 처리	이용행위	비고
보상금 지급	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출력)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출력)	국가, 지자체, 학교가 저작재산권자인 도서로 비판매용은 제외
	다른 도서관으로 디지털 자료의 전송	판매용으로 발행후 5년이 경과된 자료에 한해 전송 가능
무상 이용	개인의 조사연구를 위한 아날로그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	1인 1부, 일부분 복제
	도서관 자체보존을 위한 디지털 ·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 아날로그 복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
	다른 도서관의 요청에 의한 아날로그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	
	열람목적의 관내 전송을 위한 아날로그 자료의 아날로그 복제	
	열람목적의 관내 전송을 위한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복제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
	열람목적으로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한 자료의 관내 전송	동시 열람자수 제한 범위 내

쇄매체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교수는 주로 대학교 내에 입점하여 있는 복사점에서 복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내 복사점은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통해 이미 저작권 이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교수가 복제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에서 언급한 5-50%의 범위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복제 가능한 부수는 강의에 등록한 학생과 교수 본인이 이용할 만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영국의 CLA에서는 대학에서 강의용으로 복제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는데, 이는 단행본의 한 장(chapter), 연속간행물 한 호(issue)의 기사 한 편, 회의 자료의 기사 한 편, 선집 제작시에는 10페이지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지침은 대학의 교수로 하여금 공정사용의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범위를 제시하므로 국내에서 적극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CLA의 지침은 아날로그 복제에만 해당하며, 디지털 복제 · 전송에 대해서는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국내 저작권법에서도 사적 이용을 위해 디지털 복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강의를 위한 디지털 복제에 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교육목적이라 할지라도 디지털 복제는 불법 행

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교수가 교육목적을 위해 디지털 복제·전송을 할 때에는 1)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고, 2) 강의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3) 이용자 인증을 거친다면 어느 장소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4) 당해 학기의 수업에서만 이용하고 학기가 끝났을 때에는 시스템에서 제거 또는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5) 복제방지 장치 등 저작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내용이 법 조항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제정이 이루어질 때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원격교육도 활발하게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3) 학위논문 서비스를 위한 복제·전송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학생이 작성한 학위논문을 디지털 복제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전송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작권자인 학생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좀 더 자유롭게 복제·전송하는 방법과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복제·전송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방법이 최상이지만, 주로 기출업자인 경우에는 거소 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제한된 조건 하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거나, 저작권자와의 연락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에 보상

금을 공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법 제47조).

동의서를 받고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로부터의 동의서는 디지털 복제를 통한 전송 행위까지 포함하는지 그 범위를 확실히 해야 한다.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의서의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저장·전송 등은 금지함.
-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0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0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0개월 이내에 본교 도서관에 이를 통보함.
- 본교 도서관은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본교 도서관과 협정을 체결한 다른 대학 도서관 및 기관에 기증하는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 배포·전송된 학위논문은 이용자가 다시

- 복제 및 전송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연구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것을 금하는 것에 동의함.
- 향후 학위논문서비스의 유료화 시 저작권 사용료는 연간 ○회 이상 이용된 저작물에 한하여 해당 저작물의 수익금의 ○%를 매년 ○회 지급받는 것에 동의함.

저작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 도서관은 소장하고 있는 학위논문에 한하여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하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위논문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법 제28조제2항).

덧붙여 국회도서관 및 한양대학교의 백남학술정보관은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인 연락을 취하는 대신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위논문의 저작자들로부터 디지털 복제·배포에 대한 이용허락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서는 이러한 노력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지정자료제도를 위한 복제·전송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대학 도서관(University of South Dakota I.D. Weeks Library)¹⁾은 공정사용에 의거, 전자형태의 지정도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 준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도서관에서 그대로 수용, 준수해도 저작권 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전자지정도서는 해당 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만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
- 전자지정도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비영리적 이용만을 목적으로 할 것
- 전자지정도서를 작성하기 위해 책 전체를 스캔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전자지정도서는 한 학기동안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학기말에 접근할 수 없게 통제하거나, 특정일에 읽도록 지정한 특수자료는 그 날이 지나면 시스템에서 자동 삭제도록 할 것
- 저작권 경고를 각 전자지정도서에 표시할 것
- 전자지정도서는 과목명, 교수명, 학과명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고 저자 또는 서명으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 전자지정자료시스템은 당 대학의 전자우편 사용자명과 패스워드로만 접근을 통제할 것
- 전자지정도서의 담당사서는 공정사용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의 요청은 거부할 것

(5) 원문제공 서비스를 위한 복제·전송

도서관이 관내 전송을 위해 소장자료를 디지털 복제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 만큼이며, 관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그 자료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디지털 복제는 불가능하다(법 제28조2항과 제4항). 즉, 해당 자료가 도서관에서 구매하여 구독하는 상업용

1) University of South Dakota I.D. Weeks Library. [2004. 2. 10].
<<http://www.usd.edu/library/ereserve.shtml>>.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저널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디지털 복제할 수 없고 이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소장자료를 디지털 복제하여 도서관 외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경우와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전송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분관의 경우도 다른 도서관에 해당한다.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1)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법 제28조제1항제3호) 소장자료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를 아날로그 복제할 수 있다. 디지털 복제는 불가능하다(법 제28조제1항). 2) 다른 도서관 안에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소장 도서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단 비매용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된 판매용 자료이어야 하며,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도서는 디지털 복제가 불가능하다.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을 행한 도서관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28조제3항-6항). 그러나 도서관에서 다른 도서관 이외의 장소 즉, 교내 연구실이나 강의실 등으로 소장자료를 복제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 처리가 필요하다.

한편 도서관 이용자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 중앙도서관, 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른 도서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전송받아 컴퓨터 등을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나 다운로드는 할 수 없다. 이 경우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안에서 정해진 컴퓨터 등을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원문을 무단으로 복제 또는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복제방지조치 등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송을 행한 도서관과 디지털 자료를 출력한 도서관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추천도서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서의 표제면을 디지털 복제하여 게시하는 서비스는 저작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관행상 뮤인이 되고 있지만, 도서의 표제면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표제면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및 전송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도서관은 이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가 필요하다.

신문기사 즉, 보도기사, 사설, 논평, 칼럼 등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를 스캔 또는 재입력의 방법으로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즉, 해당 신문사 또는 기자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이종문 2003, 21-22). 그러나 신문기사 중에서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창작성의 결여로 저작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추출하여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신문 기사를 스캔이나 재입력이 아니라 신문사의 홈페이지로 단순링크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서달주 2003).

분류기호, 저자기호 등의 편목정보와 저자명, 서명, 발행처명 등의 서지정보는 창의성이 있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도서관은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 기본서지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재의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써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저작물의 제목과 저자 등 서지관련 사항은 저작물에 수록된 그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13).

목차나 색인서지는 그 자체만으로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목차를 작성하거나 그 속성을 분석하여 색인을 작성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수 있다.

초록, 서평 등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약 5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저작물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글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의 일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저작자 등이 작성한 초록을 이용자가 쉽게 접하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요인보다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작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종문 2003, 21). 그 예로 미국 화학초록서비스(CAS; Chemical Abstract Service)는 화학·화공 관련 전문 데이터베이스로서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잡지 등에 발표되는 논문을 저자나 발표연월일, 제목 등의 서지

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요약팀을 구성하여 이들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초록 작성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나 저작자들이 오히려 자신의 저작물이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므로 사실상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없다고 한다. 이는 일본 문부성의 학술정보센터(NACSIS), 일본 과학기술청 산하의 과학기술진흥사업단(JICST)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첨단학술정보센터 1997, 55).

(7) 링크 서비스

단순링크는 홈페이지에 다른 홈페이지의 초기화면(top-page)을 링크하는 것인데, 웹사이트에 자료를 올려 놓았다는 것 자체가 링크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Smedinghoff 1996, 22).

직접링크는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거치지 않고 내부화면(sub-page)으로 곧바로 접속 가능하도록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링크된 쪽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러한 분쟁이 영국에서 발생한 적이 있는데(Shetland Time Ltd. v. Dr. Jonathan Wills and Another)²⁾, 결국 그 판결에서 링크정지 가처분이 인정되었으나 직접링크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직접링크는 타인이 노력과 시간 및 비용을 들인 것에 무임승차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그 반사적인 효

2) BitLaw, Linking and Liability. [2003. 11. 14].
<http://www.bitlaw.com/internet/linking.html>.

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줄 수도 있다(홍재현 1999).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직접링크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프레이밍 기법을 이용한 링크는 웹 화면을 브라우징 프레임(browsing frame)과 타겟 프레임(target frame)으로 나누어 브라우징 프레임에는 링크를 한 홈페이지의 프레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겟 프레임에는 다른 홈페이지의 자료가 현시되도록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이종문 2003). 링크한 사이트의 주소와 그곳에 수록된 광고는 그대로 유지된 채, 링크되는 타겟 사이트(target site)의 홈페이지나 웹페이지에 수록된 광고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웹사이트 정보의 출처를 혼동케 하므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으며, 링크된 사이트가 현시되더라도 링크한 사이트의 URL이 화면 상단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이상정 1999, 40)도 있다.

그러나 링크의 방식과 상관없이 링크된 홈페이지에 이와 관련 특별 규정이나 규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르지 않는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홈페이지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다른 사람의 창작성이 있는 웹페이지를 링크하기 전에 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며,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홍재현 1999, 39-40).

(8) 비도서자료의 관외 대출 및 공연, 방송, 전시

비도서자료의 관외 대출에 대한 저작권심의 조정위원회의 답변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이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도서관이 비영리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에는 대여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관외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다만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해야 하며, 도서관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다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대학도서관 내에서 한정된 다수에게 동시에 시청하도록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의 공연·방송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규정(제26조)이 있는 바, 이 조항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과 방송을 행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는 관람자들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며, 대여점에서 빌린 것이 아닌 판매용 자료 즉, 도서관의 소장자료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된 자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전시회 등의 문화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거나, 도서전시회, 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도서관에서 소장자료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시의 대상이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하고, 그 이외의 저작물 즉,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도형저작물 등은 자유로이 전시할 수 있다. 학

생들의 졸업작품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그 작품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면 졸업작품의 저작권자인 학생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전시할 수 있다.

(9) 비도서자료의 복제

현행 저작권법에는 비도서자료의 복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비도서자료의 경우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이영아 2003). 즉, 비도서자료도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및 아날로그 복제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쇄자료 일부의 그림이나 사진 등을 슬라이드로 제작하거나 비디오테이프 및 LD 등의 영상자료를 VOD로 제작하는 행위 등 매체의 형태를 변환하는 복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공중파 TV를 통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녹화하여 그 복제물을 이용자에게 열람시키는 행위 또한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하기란 쉽지 않다. 영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교육 목적을 위해서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 등의 녹화(음)가 계약 조건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저작권 처리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국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단체의 활동이 왕성하고 저작재산권자 단체와 저작물 이용자와의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국내의 저작재산권자 단체는 한국복사전

송권관리센터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목적으로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의 녹화(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저작재산권자 단체의 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악보, 사진, 신문, 지도 등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도 저작권 처리를 해 줄 관련 저작권 단체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각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 형태에 따라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개별적인 계약을 맺어서 저작권 처리를 하고, 계약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로써는 정경희(2002)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단 구입이 가능하다면 아무리 교육용이더라도 구입을 해야 하며, 판매하지 않는다면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체 등 그 저작권자를 찾아 복제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적법한 행위에 속한다.

6. 요약 및 제언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도 점차 이슈화되고 있다. 수많은 저작물 등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으로 인해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더욱 대량적이고 첨예해지리라 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에게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자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저작권 수용 정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학도서관을 그 대상으

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작권침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의 '상담 Q&A'란에 게시되어 있는 질의들과 도서관메일링리스트의 저작권 관련 질의들을 분석하여 도서관에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였으며, 관련 문헌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 정리하여 이러한 쟁점에 대한 해석을 도서관 및 이용자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특징으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학위논문 서비스, 지정자료제도, 원문 제공 서비스,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링크, 비도서 자료 관련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수용 정책이 준수되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작권법 제도의 안정화이다. 현재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저작권법 제28조 및 도서관 보상금제도 등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많은 세미나 및 간담회, 설명회 등이 개최되어 저작권법 규정에 대한 사서의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작권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담 사서의 배치와 모든 직원 및 이용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정상조(1996, 10)는 선진외국의 도서관 사서 가운데 저작권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는 사서 및 부서의 존재는 저작권 관련 문제의 지속적인 모

니터를 통해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한 도서관 사서는 물론 도서관 운영진, 도서관에 입주해 있는 복사업체의 직원 및 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법의 준수 및 저작권 수용 정책에 대한 교육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저작권 확보를 위한 도서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기증받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에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 저작권 기증의 구체적인 조건을 표시하여 GNU(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운동, 프리웨어나 공유웨어의 형태로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서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그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저작권에 대한 모든 이의 인식 제고이다. 아무리 도서관이라 하여도 기존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화하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한다거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출력한 저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저작권 침해가 된다. 어느 매체를 통하여, 어떤 방법을 통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을 이해하고 이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성인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권세기. 2002. 공중전달권과 디지털도서관(저작권법 제28조를 중심으로). 『입법정보』, 제49호: 1-17.
- 이상정. 1999. 인터넷상의 저작권. 『과학기술법연구』, 제5집: 29-48.
- _____. 2000. 복사권 집중관리기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검토. 『계간저작권』, 여름호: 23-32.
- 이영아. 2003. 개정 저작권법상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 설명회』, 2003년 12월 10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이종문. 2002.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보호 환경 평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9(3): 212-236.
- _____. 2003.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제도. 『디지털도서관과 저작권·기술 강좌』, 2003년 4월 26일. 경기: 한국디지털정보캠퍼스.
- 이호홍. 1999. 『복사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보고서』. 서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_____. 2003. 저작권신탁제도를 통한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서비스 방안. 『디지털도서관』, 제30호: 42-55.
- 日本複寫權センター. 1999. 日本複寫權センターの概要. 日本複寫權センター. 재인용: 홍재현. 2000. 디지털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1(1): 67-72.
- 정경희. 2002. 디지털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 『디지털도서관』, 제26호: 10-26.
- 정상조. 1996.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33(6): 10-14.
- 조선일보. 2000. 도서관 대출도 저작권료 내야 하나?, 4월 12일.
- 첨단학술정보센터 1997. 『학술원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 서울: 첨단학술정보센터.
- 한겨레신문. 2002. 전자출판물 저작권 뜨거운 논란, 6월 18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2. 『도서관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 지침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허희성. 2001. 『新著作權法 逐條概說. 上』. 서울: 저작권아카데미.
- 홍재현. 1999. 인터넷 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31-48.
- 黃迪仁. 2001. 도서관과 저작권.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대책 워크숍』, 2001년 6월 4일. 서울: COEX 회의실.
- 서달주. 2003. 2003년 11월 13일, 28일 서울에서 저작자의 면담.
- 이영아. 2003. 2003년 11월 20일, 25일 저자와의 전자메일.
- Bruwelheide, Janis H. 1989. 'Do You Have a Copyright Policy?'. *School Library Journal*, 35(7): 129.
- Crews, Kenneth D. 2000. *Copyright Es-*

- sentials for Librarians and Educators.*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Goodyear, Marilu. 2001. *Forward to Copyright in Cyberspace: Questions and Answers for Librarians, by Gretchen McCord Hoffmann.* New York: Neal-Schuman Publishers.
- Hoffmann, Gretchen McCord. 2003. "What Every Librarian Should Know about Copyright, Part IV: Writing a Copyright Policy". *Texas Library Journal*, 79(1): 12-15.

